



## 일부다처제의 문제

-아세르 인트레이터

우리는 목회자들 (특히 이교도권, 아프리카권, 이슬람권에서)로부터 부흥의 때에 일부다처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일부다처제 결혼을 한 이들 중에서 예수아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대한, 유대-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제가 제안해 드리는 성경적 원리는 이렇습니다.

1. **회개** – 이 문제는 복잡한 성격이 있으므로, 기도로 겸손하게 민감하게 다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노예제도와 이교도와 결혼 등과 같은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회개하고, 부르짖고, 금식하며 주님께 구하곤 했습니다 (에스라 9장).

2. **복음** – 모든 참된 해결책에는 심령의 변화가 수반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거듭남의 기적을 알게 될 때까지는 이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3. **성경의 가르침** – 하나님의 뜻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라는 성경의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성경은 누구든 일부다처 혼인을 한 사람이 회중(교회)의 장로가 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 **금지** – 일부다처 결혼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타협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당면 문제는 오로지 믿기 이전 상태를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된 이들에 관한 것입니다.

5. **사회적 변화** – 우리가 소망은 기도와 성경의 도덕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그 나라의 법과 우리 주변 사회의 사회적 규범이 일부일처제만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6. **실행 가능한 해결책** – 예슈아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임시로 이혼을 허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선의 요구에 반할 경우일 때라도,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상황을 다룰 임시방편을 찾아야 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7. **케이스 별로 분리** –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다룰 때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다음 각각의 경우를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조사하는 제도를 세웠습니다 (에스라 10장).

8. **판결 위원회** – 각각의 경우를 다루기 위해 각 공동체마다 조사 위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혹은 그들이 협력관계일 경우 지방정부와 함께 일해야 합니다). 이런 판결 위원회는 지역 장로들의 권위 아래 섬겨야 합니다 (사법적 결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고린도전서 6장 참조).

9. **무고한 사람들의 보호** – 율법의 목적은 약하고 무고한 이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관련된 여성들과 어린이들은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이것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10. **무효화가 최선** – 2차 결혼관계의 여성들과 자녀에게 피해가 되는 일 없이 그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경우라면, 일부다처 결혼 관계들을 무효화하고 그 여성들과 자녀들이 떠나도록 허락해 줍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원하면 그 사람의 헤어질 자유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7장 참조).

11. **타협 가능성** – 조사 후 여성들과 자녀들에게 심각한 피해 없이 무효화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그 여성이 충분히 잘 인지하는 가운데 그대로 있기를 더 원한다면, 타협적 관계지속을 허용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살이 기간이 끝난 후에도 가족과 그대로 있기로 결정한 종에 관하여 신명기 15장 참조) 남아 있는 아내는 누구든 지위를 온전히 인정받아야 하며 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2. **서면 결정** – 판결 위원회 (혹은 지방 법원)이 가능한 최고의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 그 가족에 질서와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여성 해방

아세르 인트레이터가 예수아께서 여성에게 내면과 외면의 진짜 자유를 주신 원조 여성 해방자이심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시청해 보십시오!

자막: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